

신탁계약서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p> <p>나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40%이하</u>로 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제17조제1항제1호의 모투자신탁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이하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가. 트러스톤 중기채권 증권 모투자신탁[채권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%이하로 한다.</p> <p>나. 트러스톤 증권 모투자신탁[주식]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<u>30%이하</u>로 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신설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